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87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주진우 · 박준태 · 김정재
권성동 · 송언석 · 우재준
이인선 · 김소희 · 추경호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이 반복적으로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와 형벌의 일반예방 기능이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이 범죄로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대통령과의 연관 가능성 및 이해충돌 우려로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통령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임.

또한, 입시 · 채용 · 입찰과 같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영역의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살인 · 강도 · 성폭력 · 마약 등 강력범죄 및 그 범죄를 비호 · 은닉한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 · 횡령 · 배임

등의 경제범죄, 선출직 등 정치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선거권 제한 등 그 범죄로 인한 선거상의 불이익이 최소 1회 현실화되기 전까지 사면을 제한하도록 하여,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 있는 현행 사면 제도를 정상화하고 사면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면법」에 사면 제한 사유를 열거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 및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면·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면 등의 제한)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범한 사람
2. 대통령이 범죄로 인하여 수혜를 입은 범죄를 범한 사람
3. 대통령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형법」 제229조부터 제231조(공문서·사문서의 위조·변조·행사),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입찰 방해), 그 밖에 입시·채용·입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입시·채용·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한 범죄를 범한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4조까지(뇌물 관련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뇌물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정치자금법」 위반 중 기부·수수에 관한 범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금품 수수에 관한 부패 범죄를 범한 사람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

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범죄를 교사·방조하거나 범인도피·은닉, 증거인멸 등으로
비호한 사람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그 밖에 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8. 정치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범죄를 범한 사람 중 그 범
죄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피선거권 제
한 등 선거상의 불이익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8호에서 “정치인”이란 「공직선거법」 제2조를 준용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
직 공무원 및 그 후보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7호에서 “피해회복”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원상회복, 공
탁, 기탁 및 이에 준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사면 등의 제한)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u> <u>1.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범한 사람</u> <u>2. 대통령이 범죄로 인하여 수혜를 입은 범죄를 범한 사람</u> <u>3. 대통령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u> <u>4. 「형법」 제229조부터 제231조(공문서·사문서의 위조·변조·행사),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입찰 방해), 그 밖에 입시·채용·입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입시·채용·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한 범죄를 범한 사람</u> <u>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4조까지(뇌물 관련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뇌물 관련 범죄의 가중처</u>

별), 「정치자금법」 위반 중
기부·수수에 관한 범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금품 수수에 관한 부패
범죄를 범한 사람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
죄를 범한 사람 및 그 범죄
를 교사·방조하거나 범인도
피·은닉, 증거인멸 등으로
비호한 사람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
종, 그 밖에 사기·횡령·배
임 등 경제범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피해자 전원과의 합
의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8. 정치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
7호까지의 범죄를 범한 사람
중 그 범죄로 인하여 「공직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등 선거
상의 불이익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8호에서 “정치인”이
란 「공직선거법」 제2조를 준
용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 및
그 후보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7호에서 “피해회복”
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원상회
복, 공탁, 기탁 및 이에 준하는
조치가 포함된다.